

2023 예술경영대상 공모 안내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전문예술법인·단체 및 예술기업(단체)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'예술경영대상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올해 12회를 맞는 '예술경영대상'에 예술경영 및 예술산업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예술법인·단체와 예술기업(단체), 예술경영인(개인)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및 추천을 부탁드립니다.

□ 공모개요

- (공모명) 2023 예술경영대상 공모
- (공모목적) 예술경영 및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- (공모 및 추천 대상) 예술경영 및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전문예술법인·단체, 예술기업(단체) 및 예술경영인(개인)
- (공모기간) 2023. 9. 8.(금) ~ 10. 18.(수) 18:00
- (선정규모) 3개 유형, 6개 법인 등
- (주최/주관) 문화체육관광부 /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
- (후원) 수림문화재단

□ 세부내용

- (공모 및 추천 기준) 최근 3년간(2020.1.1.~2022.12.31.) 예술경영 및 예술산업 분야 활성화 및 문제 해결, 발전에 기여한 전문예술법인·단체, 예술기업(단체) 및 예술경영인(개인)
- (주제) 예술경영 관련 분야별 우수사례

구분	우수사례 예시
사업기획	신규 사업모델·브랜드 개발·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 및 관객 개발 사례 등
조직운영	조직(고용)구조·문화 업무환경 및 직원복지·교육 개선 등을 통한 경영 활성화 사례 등
재원조성	투자후원 유치, 정기 후원회원 조직·발굴, 온라인 활용 재원조성 사례 등
해외진출	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등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례 등

○ (유형)

공모·추천 유형		대상
대분류	소분류	
유형 1 공모	공공	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 분야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공공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, 설립목적 등이 지방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문화재단 ③ 「공직자 윤리법」 상 공직유관단체 지정기관 ④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의 지휘·관리·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
	민간	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분야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
유형 2 공모	일반	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 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예술산업분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예술기업(단체) 및 비영리법인(단체)
유형 3 공모·추천	개인	예술산업분야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예술경영인(개인)

*** (예술기업)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**

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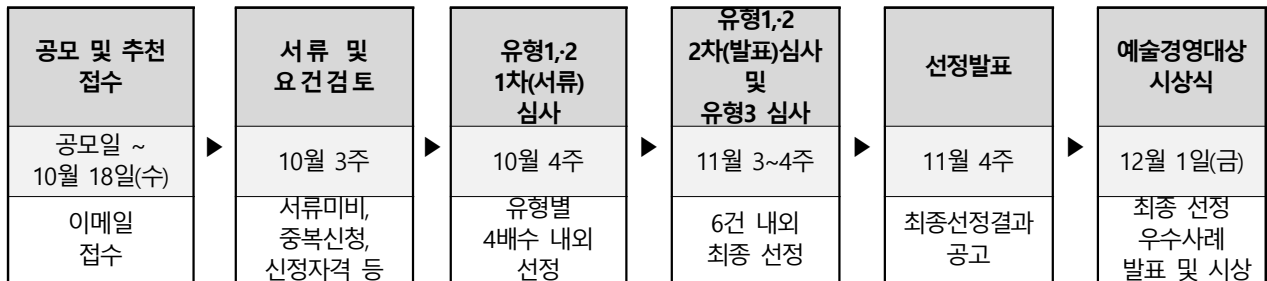
*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(정의) 및 제 36차(개정 22.9.27.), (시행 23.3.28.)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

○ (선정 및 포상규모) 3개 유형, 6개 법인 등(총40백만원)

구분		유형1 전문예술법인·단체	유형2 예술기업(단체)	유형3 예술경영인(개인)
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	상장/시상금	(공공) 1매 / 없음 (민간) 1매 / 10백만원	(일반) 1매 / 10백만원	(개인) 1매 / 5백만원
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	상장/시상금	1매 / 10백만원		
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	상장/시상금	1매 / 5백만원		
합계		40백만원		

※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경우 정부포상·문체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름

○ (추진절차)

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공모 및 추천 접수

○ (제출서류)

구분	유형1 전문예술법인·단체	유형2 예술기업(단체)	유형3 예술경영인(개인)
필수	① 공모신청서 ②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서 ③ (법인)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, 법인등기부등본 (단체)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	① 공모신청서 ② (법인)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, 법인등기부등본 (단체)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고유번호증)	① 공모신청(추천)서
선택	① 전문예술법인·단체 소개서 ② 관련 증빙자료	① 예술기업(단체) 소개서 ② 관련 증빙자료	① 포트폴리오 등 ② 관련 증빙자료

* 세부내용 공모신청서내 [예술경영대상 공모 제출서류 및 작성 유의사항 안내] 참조

* 유형[1], 유형[2]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선정단체에 한하여 발표심사용 PPT 추가 제출 요청 예정

* 유형[3] 추천의 경우 접수 후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요청 예정

○ (접수기간) : 2023. 9. 8.(금) ~ 10. 18.(수), 18시까지

*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제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됨

○ (접수방법) : 이메일 접수

- 접수처 : artsdb@gokams.or.kr (2023 예술경영대상 운영 사무국)

- 모든 제출서류는 압축파일(ZIP) 하나로 제출(파일명 및 메일 제목 통일)
- 파일명 및 메일 제목 : 2023예술경영대상[유형 1/2/3 중 선택 기재]_단체/성명
* 예시 : 2023예술경영대상[유형1]_예술경영지원센터.zip

□ 결과발표

- (1차심사) 10월 4주 예정
- (2차심사) 11월 4주 예정
- (결과안내(공통))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대상 개별 안내
* 최종 선정기업, 단체, 개인은 예술경영대상 시상식 참석 및 사례 발표 필수

□ 문의

- (전화) 02-708-2240 (2023 예술경영대상 운영 사무국)
- (운영시간) 10:00 ~ 17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

[참조] 포상기준 및 표창 취소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경우 정부포상·문체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름

※ 장관포상 제외자

- 임직원이 포상제외자에 해당하거나, 포상대상 단체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경우
- 포상제외자 :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, 산재비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,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, 임금체불사업주, 각종 비리 부조리,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여 단체·법인이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8조 및 「상훈법」 제8조에 해당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

※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(표창 취소의 절차)

- 표창 추천권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

※ 상훈법 제8조(서훈의 취소 등)

-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서훈 취소 및 물건·금전을 환수함
 - 1)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 - 2)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
 - 3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